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72

발의연월일: 2021. 9. 2.

발 의 자:위성곤·윤재갑·어기구

김성환 · 이동주 · 이원택

유준병 • 이은주 • 이개호

윤주경 · 김정호 · 최인호

의원(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이 20%에 불과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코로나19 이후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어 식량자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2007년부터 5년마다 자급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에도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조정된 바 있음. 또한 2015년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 배추, 고추 등 국내 원료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산 김치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집에 따라 김치 자급률 향상 역시 매우 중요

해지고 있음.

따라서 5년마다 식량 등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에 재배면적·사육두수의 확보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급목표의 지표에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17조제1항).

법률 제 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자급목표 및"을 "자급목표와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재배면적·사육두수의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 이 경우 자급목표는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1. 전체 및 품목별 식량자급률
- 2. 전체 및 품목별 곡물자급률
- 3의3. 김치 자급률

제17조제1항 중 "정책동향"을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기본계획이 종료된 이후 수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발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②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2
<u>자급목표 및</u> 그 추진계획	- <u>자급목표와 자급목표 달성을</u>
<후단 신설>	위한 재배면적·사육두수의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
	<u>이 경우 자급목</u>
	표는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
	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의2. ~ 6. (생 략)	2의2. ~ 6.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③
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	
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	
하고 고시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 의 지표로 활용한다.

- 률
-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 3. · 3의2. (생략)

<신 설>

- 4. 5. (생략)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 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u>제출하</u> 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 는 매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 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 |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1.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 | 1. 전체 및 품목별 식량자급률 2. 전체 및 품목별 곡물자급률 3.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김치 자급률 4. • 5. (현행과 같음) -----제출하 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책동향, 제14조제2 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제출하고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o}----. ② • ③ (현행과 같음)